



### 제 1 조 (용어의 정의)

“전시회”라 함은 “24 회 한국골프 종합 전시회(KOGOLF 2019)”를 말한다. “전시자(참가업체)”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,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. “주최자”라 함은 “매일경제신문사”, “MBN”, “뚜그린웍스/엑스칼프”를 말한다.

### 제 2 조 (참가신청 및 계약의 성립)

본 참가신청 및 계약은 전시자(참가업체)가 참가신청(계약)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이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참가비(부스비용)의 30%(부가세 포함)를 계약금으로 납부할 때 성립된다. 전시자(참가업체)가 참가비의 잔금(부스비용의 70%, 부가세 포함)을 주최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 전시회 참가가 최종 확정되면, 이에 의거 주최자가 전시자(참가업체)에게 전시회 참가에 따른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.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, 주최자는 전시공간배정 취소, 위약금 청구 등 계약이 이행에 따른 책임을 전시자(참가업체)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### 제 3 조 (전시공간 배정)

주최자는 계약금 납입순서, 참가규모, 전년도 참가실적, 전문관 구성, 전시품성질 등 제반기준에 의거 전시장내 각 전시자(참가업체)의 위치를 배정한다.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(참가업체)에 할당된 공간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, 전시자(참가업체)는 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# 제 4 조 (설치 및 철거)

전시부스의 설치 및 철거(전시품 반입/반출 포함)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(참가업체)는 자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### 제 5 조 (보험, 보안 및 안전)

전시자(참가업체)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하며, 전시자(참가업체)의 활동은 할당된 전시공간이내에 있어야 한다. 또한, 전시품의 분실, 훼손 및 도난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(참가업체)에게 있다.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, 지나친 소음 등 다 전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. 주최자는 필요 시 시공작업 및 설비를 제한할 수도 있다.

### 제 6 조 (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)

전시자(참가업체)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, KOGOLF 2019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### 제 7 조 (전시품 제한 및 전시실 관리)

전시자(참가업체)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하며, 전시자(참가업체)의 활동은 할당된 전시공간이내에 있어야 한다. 또한, 전시품의 분실, 훼손 및 도난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(참가업체)에게 있다.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, 지나친 소음 등 다 전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.

### 제 8 조 (전시부스 양도의 금지)

전시자(참가업체)는 기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최자의 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### 제 9 조 (현장판매 금지)

전시회 참가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관람객에게 설명하는 데 있으므로, 전시자(참가업체)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. 단, 주최자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내 특별코너 등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, 골프클럽 판매의 경우 4 부스 이상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업체에 한하여 자사 브랜드만 허용한다. 또한,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(참가업체)의 책임으로 한다.

### 제 10 조 (참가신청해지)

전시자(참가업체)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또는 주최자가 정한 전시회 운영규칙을 어길 경우,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### 제 11 조 (규모축소 및 위약금)

전시자(참가업체)가 신청한 전시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,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 후 15 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동 위약금은 기 납부된 참가비로 우선 차감하며, 부족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, 잉여시 반환된다.

- 1) 2019. 1. 30 까지 일부 취소시  
취소면적/신청면적 x 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 x 30%
- 2) 2019. 1. 31 부터 2. 14 까지 일부 취소시  
취소면적/신청면적 x 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 x 70%
- 3) 2019. 2. 15 이후 일부 취소시  
취소면적/신청면적 x 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 x 100%

### 제 12 조 (참가취소 및 해약금)

전시자(참가업체)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포기(취소)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포기(취소) 후 15 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동 위약금은 기 납부된 참가비로 우선 차감하며, 부족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된다.

- 1) 2019. 1. 30 까지 취소시  
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의 30% 납부
- 2) 2019. 1. 31 부터 2. 14 까지 취소시  
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의 70% 납부
- 3) 2019. 2. 15 이후 취소시  
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의 100% 납부

### 제 13 조 (불가항력)

주최자가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전시자(참가업체)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# 제 14 조 (관계규정의 준용 및 해석)

- 1)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(참가업체)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또한 전시자(참가업체)는 전시회 개최장소인 코엑스 전시장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최자가 정한 관계규정과 주최자가 적용하는 관계법규에 따른다.
- 3) 본 계약서 및 기타 계약문서의 해석에 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(참가업체)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최자의 해석에 따른다.

### 제 15 조 (분쟁해결)

본 참가 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,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

### 제 16 조 (청렴계약 이행)

주최자와 전시자(참가업체)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각-각절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,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.